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호
----------	---

제출년월일 : 2023. 2.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관리동에 현재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신규위탁 시설

연번	시설명 (가칭)	소재지 (행정동)	확충 방법	정원	비고
1	정릉 햇살가득 어린이집	북악산로 851 관리동 1층 (정릉1동)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전환	29	현재 민간어린이집 운영 중 2023년 3월 국공립으로 전환 하여 개원 예정

1)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2) 위탁체 선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따라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나.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은성 어린이집 (우 지 혜)	종암로24가길 80 106-101 (종암동)	개인 (우 지 혜)	20/20	2019.01.01. ~ 2023.12.31.
2	정릉제일 어린이집 (박 민 정)	정릉로31가길 46 (정릉4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 (김 기 남)	40/34	
3	종암중앙 어린이집 (이 유 진)	종암로19길 18 (종암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종암중앙교회 (조 성 환)	75/58	

1) 위탁기간 : 2024.01.01. ~ 2028.12.31.(예정)

2)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2023.09.예정)

## 다. 위탁 사업의 범위

-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관련근거

###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